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2024. 6. 20.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344호로 2024년 5월 31일 최봉희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4년 6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영등포구 혼인신고자에게 국기를 선물하는 내용의 국기 보급 사업 추진과 가로기 게양 규정 등의 신설을 포함하는 조례 정비를 통해 영등포구민의 국기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을 보다 드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자치법규명 변경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로 변경

나. 조례 목적 정비(안 제1조)

다. 가로기 정의 및 게양 관련 규정 신설(안 제2조제3호 및 제8조)

라. 국기 무상 보급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마.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국기법」,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5. 22. ~ 5. 26.) :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기를 무상 보급할 수 있는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관하여 명시하고, 국기 게양 종류를 추가함으로써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정의)에서는 가로기에 대한 정의를 신설함.
- 안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에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하여 국기선양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가로기의 게양)에는 가로기 게양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조례안 전체에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함.

○ 검토 결과

- 본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국민의 애국정신을 고양하

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14.2.27. 제정되었으며, 이번 일부개정안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한 국기 무상 지급에 관한 사항¹⁾을 신설하고, 국기 계양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안 제5조는 「국기의 계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²⁾에 근거한 것으로, 관련 조항에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19조제1항³⁾에서 지방

1) <자치구별 국기 계양 관련 조례 제정 여부 및 무상지급 사항>

연번	자치구	조례	무상지급 사항
1	성동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2	동대문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기계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3	중랑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기계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전입자, 혼인신고자)
4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전입자, 혼인신고자)
5	노원구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기 계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6	마포구	서울특별시 마포구 국기계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 (전입자, 혼인신고자)
7	양천구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기계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8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국기계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전입자, 혼인신고자)
9	동작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계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전입자, 혼인신고자)
10	강동구	서울특별시 강동구 국기계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11	강서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
12	구로구	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기 계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13	관악구	서울특별시 관악구 국기 계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

2)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3)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

자치단체는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개발 및 추진하도록 되어있음.

- 또한,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2조⁴⁾에서는 국기에 “가로기”에 관하여 정의하고 있는바, 본 조례에 가로기에 대한 정의와 가로기 게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것으로,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⁵⁾에서 국기를 게양하는 단체의 장에게 관리의 의무를 부여하여 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관계법령 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2023년 기준 우리 구(區)의 대략적인 혼인신고자 건수는 약 1,500명이고, 국기 비용은 약 6,500원으로 9,750천원 가량의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됨.

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한다.

- 4)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 5)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참 고 자 료

1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국기의 관리 등) ①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2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15조(국기 보급 확대)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국기를 선물로 증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공동주택이나 각종 업소에서도 입주 증정품 또는 사은품 등으로 국기를 활용할 것을 적극 권장하도록 한다.

제19조(국기의 선양)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기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의 국기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대전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발·추진하도록 한다.